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1999년 2월 20일

나. 회부일자 : 1999년 2월 20일

3. 제안이유

'98년 12월 국회에서 의결되어 '99. 1. 1부터 시행중인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도세조례의 일부 내용을 법과 일치되도록 정리하기 위함.

4. 주요골자

가. 별장등 사치성재산의 중과세율 조정

별장·골프장등 사치성 재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율을 100분의 750으로 중과세하고 있던 것을

⇒ 100분의 500으로 함(안 제23조 제2항)

나. 1가구당 1대초과 차량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규제 삭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2배 중과하는 것을 삭제함.

다. 자동차의 저당권설정등록시 등록세율 조정

자동차를 저당권 설정등록시 등록세율을 채권금액의 1,000분의 10 내지 1,000분의 30으로 각각 차등적용하던 것을
⇒ 1,000분의 2의 세율로 단일화함(안 제31조 제1항·제2항)

5. 검토의견

충청북도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는 지방세법이 개정공포(법률 제5615호, '98. 12. 31) 됨에 따라 본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으로는

별장·골프장등 사치성 재산 취득시 취득세율을 100분의 750으로 중과세하던 것을 100분의 500으로,

1가구 1대초과 취득·등록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2배 중과하던 것을 폐지하였으며

자동차의 저당권 설정 등록시 등록세율을 영업용을 채권금액의 1,000분의 10,

비영업용은 1,000분의 30으로 각각 차등적용 하던 것을 1,000분의 2의 세율로 단일화하는등

지방세 중과세제도를 일부 완화하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도세조례는 지방세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법이 먼저 시행되고 사후 조례가 개정될 때까지 일정 기간 상위법 내용과 조례내용이 불일치하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으로

향후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붙 임

-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